

「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조례에 규정된 기금 존속기한의 만료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에 의거 기금존속기한을 5년 재연장하고,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최저가격 결정 주체 명시 (안 제2조)
- 기금존속기한 연장 (안 제4조)
- 위원회 기능 추가 (안 제8조)
- 지원대상 농가 자격 명확화 (안 제16조)
- 계통출하조직의 대리 신청 자격 규정 (안 제17조)
- 생산비 및 최저가격 결정 시기 수정 (안 제18조)
- 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고시 방법 변경 (안 제19조)
- 농가당 최고 지원한도 설정 (안 제20조)
- 용어 현행화 (안 제7조, 제14조, 제17조, 제22조)
- 띄어쓰기 및 틀린 글자 수정 (안 제1조, 제5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4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, 용어 현행화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최저가격 결정 주체를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 위원회로 명시하고,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등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구미시 농업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